

영등포구민
영등포구민

위환

정보공개

가이드

정보공개제도가 뭐예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1.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정보공개청구)

예) 공문서의 열람 및 복사 청구

2.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국민은

- 알권리 충족, 국정참여의 확보, 국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영등포구는

- 투명 행정 실현, 행정의 신뢰성 확보, 국민과의 소통

사랑은 열린 문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은 어디예요?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교육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예: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6.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사전정보공표는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없이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와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것 입니다.

영등포구 홈페이지의 **행정정보>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에서 구민감사관 활동, 감사 계획 및 결과, 부서별 고충민원 처리 결과 등의 사전정보공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공개는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영등포구는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를 국민 여러분께 원문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공개장소: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단체: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거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권의 제한이 있나요?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2014두9349)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

-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공개대상 아님)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가 아닌 경우
 -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목적인 정보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2. 해당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제출

- **온라인 청구:**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편리하게 청구하세요. (www.open.go.kr)

- **직접방문:** 온라인 청구가 어려우실 경우, 해당 기관 방문

* 영등포구는 구청 1층 민원여권과 6번 창구에서 제출

- **우편 또는 팩스** 접수(청구서는 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영등포구 정보공개 접수 팩스번호: 02)2670-3585

정보공개는 어느 기관에 청구하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을
이용하시면 공개자료 수령, 수수료 납부
등이 **더욱 편리**합니다.

영등포구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는요?



청구서 제출

- 온/오프라인 청구
- 직접방문 시 1층 민원실 6번 창구



접수 및 담당부서 지정

- <정보공개처리기한: 10일 이내>
- 공휴일 및 토요일은 처리기한에서 제외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공개자료 수령

- <자료수령>
- 직접방문 시, 담당부서에서 수령
- 민원실은 접수 및 수수료 납부만



공개 결정

수수료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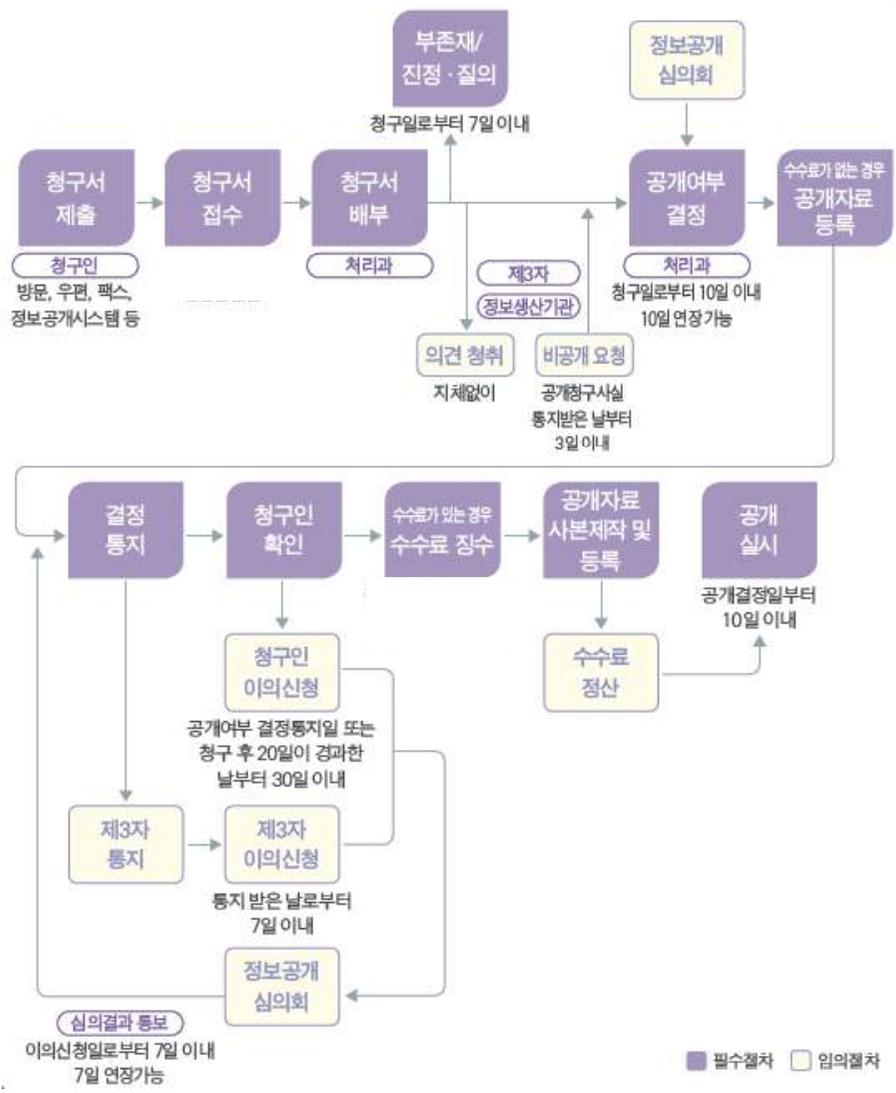
<오프라인 청구시 수수료 납부방법>

- 영등포구청 1층 민원실 2번 창구: 수입증지 구입



결정사항 통지

정보공개청구 세부 처리절차



- 정보공개처리기한: 10일
- 정보부존재, 진정질의의 통지: 7일
-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연장 가능(기관에서는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함)

청구하면 다 공개해주나요?

영등포구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의 공개 청구 시, **비공개 결정 통지** 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다음과 같은 8가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규정된 정보

예)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 개정전 소송
관련 서류, 개인의 납세 관련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관계 문서 등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3.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등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예)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5.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관계 문서 등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6.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음의 정보는 공개(비공개 대상에서 제외)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 직위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음의 정보는 공개(비공개 대상에서 제외)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결정이 납득이 안 되면요?

불복구제방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시, 서면 또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로 신청
-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소송: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공개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징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홈페이지 참조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일반 A4문서 등

- 전자파일의 복제: 무료(매체비용 별도)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기록정보공개팀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02-2670-3082)
감사합니다.

사랑은 열린 문

